

중국, 외국기업도 토지사용세 징수

국무원, 잠정조례 개정 2007년부터 시행 ... 토지사용세도 3배 인상

2007년부터 외국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 차례 내야 한다.

중국 국무원은 <토지사용세 잠정조례>를 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2일 발표했다.

조례는 중국기업들이 매년 한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3배로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.

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할 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한차례 토지매입(토지사용료)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 한다.

토지사용세는 대도시가 m²당 0.5-10위안이었으나 2007년부터 1.5-30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. 중소도시는 0.4-8위안에서 1.2-24위안으로, 소도시는 0.3-6위안에서 0.9-18위안으로 조정됐다.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.2-4위안에서 0.6-12위안으로 조정됐다.

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토지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건설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.

특히, 토지사용세 부과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 매기는 기업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통일하는 법안이 3월 전 국민대표대회(전인대)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.

하지만, 중국 정부는 국가기관, 인민단체,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부문의 사업용 토지, 종교, 공원, 유적지, 도로, 녹화지대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04>